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7월 14일 12시 58분



목차

목차	2
투자기업 인센티브	3
국내기업 지원	3
보조금 지원근거	3
보조금 지원유형	3
외국인투자기업 지원	4
지원근거	4
지원유형	4
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	5
보조금 지원근거	5
대상기업	5
지원액	5

기업지원체계 명단	최고의 투자환경	신규투자 대상지	투자기업 인센티브
부동산 투자이민제도			

국내기업 지원

🔗 보조금 지원근거

-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

🔗 보조금 지원유형

- 지원근거 :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
- 지급방법 : 착공시 100% 지급
- *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담보(이행보증보험증권 등) 확보 필요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(조례3~19조)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
산업입지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30인이상 [시행규칙 별표1]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신청기한 : 임대 및 분양계약일부터 1년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임대료) 임대료 차액 50% 한도 지원기간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 이내 (분양가) 분양가 차액 30% 한도 30억원 한도
용지매입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30인이상 [시행규칙 별표1]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용지규모 : 1,000㎡이상 매입 입주 기업 신청기한 : 용지 매입일부터 1년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토지매입비 10% 범위 5억원 한도
고 용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30인이상 [시행규칙 별표1]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신청기한 :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 6억 한도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, 3년간 고용 유지 의무
교육훈련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30인이상 [시행규칙 별표1] 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신청기한 :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 50만원 이내, 총 6억 한도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, 3년간 고용 유지 의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	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시설 보조금	인원 30인이상 ▪ [시행규칙 별표1]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▪ 신청기한 : 공장등록 완료일부터 1년 이내	▪ 100억원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3%이내, 10억 한도
컨설팅	▪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이거나, 신규채용 상시 고용 인원 30인이상 ▪ [시행규칙 별표1]시장이 정하는 전략산업 ▪ 신청기한 :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	▪ 투자 확정액의 1%이내, 2억 한도
국내기업 이전비	▪ 여수시 이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여수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후 상시 고용 20인 이상 ▪ 신청기한 : 본사 또는 공장등록일부터 1년 이내	▪ (본사) 취득가액 10%, 5억 한도 ▪ (공장) 10억원 초과액의 5%, 20억 한도 * 본사 및 공장 중 1개 보조금만 지급
투자 시설비	▪ 여수시에 공장 가동 중인 기업이 지역 내 신·증설 시 ▪ 신청기한 : 공장등록 완료일부터 1년 이내	▪ 100억원 초과 투자액의 3% 내 ▪ 10억 한도

- 사후관리 :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용인원 유지 및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

외국인투자기업 지원

🔗 지원근거

-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, 제121조의 3
-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

🔗 지원유형

- 지원근거 :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8조 및 제14조의2
-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
구 분	지원대상	지원한도	지원내용
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	제조업, 관광업, 물류업, R&D	지원대상에 따라 상이	임대료 100%까지 감면 가능(국·공유지 임대 시)
현금 지원	▪ 신성장 동력산업 ▪ 산업지원 서비스업 ▪ 부품·소재산업	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결정	투자규모, 기술수준, 신규고용 창출 등에 따라 현금 지원 규모 결정

- 보조금 세부 지원내용(조례3~14조)

구 분	지원내용
산업입지보조금	▪ 임대료 차액 50% 한도(지원기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) ▪ 분양가 차액 30% 한도 ▪ 신청기간: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
용지매입보조금	▪ 토지매입비 10% 범위 내 5억원 한도(1,000㎡ 이상의 용지를 매입하여 입주하는 기업) ▪ 신청기간: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
고용보조금	▪ 신규채용 상시고용 20인 초과 시 6개월 범위 내 초과 1인당 월50만원 이내, 총 6억원 한도 ▪ 1년 이내 신규채용 지원에 한하여 기업 보조금 지원의 이월은 인정하지 않음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위에 인하여 지원, 보조금 지원 기간은 3년간 고용 유지 의무
교육훈련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인 이상 신규채용 인원의 교육훈련기간의 6개월 범위 내 1인당 월 50만원 이내, 총 6억원 한도 3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에 한하여 지원, 보조금 지원 인원은 3년간 고용 유지 의무
시설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0억원 이상 신·증설 시 50억원 초과 시설금액의 3% 범위 내 최고 10억원 한도 신청기한: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
컨설팅 보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확정액의 1% 범위 내 2억원 한도 신청기한: 사업 개시일 부터 1년 이내
컨설팅비용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컨설팅 실시 후 사업 확정 시
지방세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름
공유재산 대부료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름
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 학교 신축 공공시설을 학교시설로 개보수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 서비스시설 신규 건립 또는 매입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숙박시설 건립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

- 사후관리 :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고용인원 유지 및 사업을 이행하여야 함

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

보조금 지원근거

-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36조

대상기업

- 외국인 투자기업 : 투자금액이 미화 3억 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1,000명 이상인 경우
- 국내기업 : 투자금액이 1,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경우

지원액

-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결정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